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9. 5., 김윤의원 등 22인

나. 회부일자: 2024. 9. 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 11.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 2.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 2. 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윤 의원)

현행법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경우 여러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분석·관리하도록 하여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제1항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연광석)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난임극복 지원을 위하여 통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통계관리의 항목들 중에 난임시술의 부작용 현황을 포함시키려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향후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임신부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 추가하려는 개정 방식으로 제11조의6제2항제5호를 신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은 임신·출산처럼 난임시술의 결과 중의 하나이므로 개정작업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제11조의6제2항제4호를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료수집의 서식 마련 및 안내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강선우)

개정안의 취지를 제11조의6제2항제5호의 신설이 아닌 제11조의6제2항제4호를 개정하도록 하고, 부칙에서 시행일에 유예 기간을 두도록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2.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통계관리의 내용으로서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난임시술의 결과에 추가하도록 자구를 정리하고, 자료수집의 서식 마련 및 안내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부칙에서 시행일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려는 것임(안 제11조의6제2항제4호 등).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의6제1항 중 “난임시술현황,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 및 난임시술에 따른 임신·출산”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결과”를 “결과(부작용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같은 조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안 부칙 중 “공포한 날”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 목·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다 목· <u>마목</u> 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조 생식술 등 난임시 술이 가능한 의료 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 ----- ----- ----- --- <u>바목</u> ----- ----- ----- ----- ----- ----- -----.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의6(통계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 생식술 등 <u>난임시 술현황</u> 및 그에 따	제11조의6(통계관리 등) ① ----- ----- ----- ----- ----- <u>난임시술</u> <u>현황</u> , 난임시술로	제11조의6(통계관리 등) ① ----- ----- ----- ----- ----- <u>난임시술</u> <u>현황</u> 및 그에 따른

<u>른 임신·출산</u>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관리(이 하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 의 내용을 포함하 여야 한다. 1. ~ 3. (생 략) 4.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출산 등 난임시술의 <u>결과</u> <신 설> <u>5. ~ 7.</u> (생 략) ③ ~ ⑤ (생 략)	<u>인한 부작용 현황</u> <u>및 난임시술에 따</u> <u>른 임신·출산</u>---- ----- ----- ----- ----- ----- -----. ② ----- ----- ----- -----. 1. ~ 4. (현행과 같음) <u>5. 난임시술로 인한</u> <u>부작용 사례</u> <u>6. ~ 8.</u> (현행 제5 호부터 제7호까지 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u>공포한 날</u>부 터 시행한다.	<u>임신·출산</u>----- ----- ----- ----- -----.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u>결 과 (부 작</u> <u>용을 포함한다)</u> <삭 제> <u>5. ~ 7.</u> (현행과 같 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u>2027년 1월</u> <u>1일</u>-----.
--	---	---

법률 제 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한다.

제11조의6제2항제4호 중 “결과”를 “결과(부작용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다목· <u>마목</u> 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 ----- ----- ----- <u>바목</u>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의6(통계관리 등) ① (생략)	제11조의6(통계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출산 등 난임시술의 <u>결과</u>	4. ----- ----- <u>결과(부작용을 포함한다)</u>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